

예비심사 안건

의안번호	제 2013- 호
의 결 연월일	2013. 11. . (제 회)

의 결
사 항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
신 설 · 강 화 규 제 심 사 안

제 출 자	중소기업청장 한정화
제출연월일	2013. 11. .

목 차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	1
□ 요 약	1
II. 규제심사안	3
1.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취소	3

I. 규제 심사(안) 개요

□ 요약

규제 사무명	현행 규제내용	변경(또는 신설) 규제내용
<p>1.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 취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창업보육센터의 임대실적이 중·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임대한 때 ○ <신설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법 제43조제4항제3호에서 “시설 및 장소의 운영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시 점검 결과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 임대실적이 중·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때 2. <u>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3회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때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제1항제2호와 관련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. ⇒ (사유) 운영실적이 부진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4항을 개정('12.8)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위법령(시행규칙 제17조)에 ‘운영실적’의 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 * (법령개정 내용) 운영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3회 연속 부진한 경우 지정취소 대상

㉒ 규제영향분석서

1. 분석대상 규제개요

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미등록		구분						
	등록단위	주규제	부수규제	신설	강화	○	내용심사	존속기한연장		
			○							
	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취소		경제적 규제	○	사회적 규제		행정적 규제			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백운만, 창업진흥과장 김성섭(042-481-4407) 									
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4항제4호 									
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	의견수렴 방식			의견내용			
	피규제자	창업보육센터사업자		입법예고 ('13.10.15~'13.11.24)			없음			
	이해관계자	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소속직원		입법예고 ('13.10.15~'13.11.24)			없음			
	관련 부처	해당없음		해당없음			없음			
규제존속기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창업보육센터 부실 운영 방지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지속적인 관리·감독이 필요하므로, 별도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									
현행규제 및 신설(강화) 규제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행 규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 '임대실적'이 중·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100분의 60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된 때 강화 규제 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,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판정 받은 경우가 연속 3회 이상 일 때 ② 창업보육센터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을 【별표 1】로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별 창업보육센터가 제출한 실적 및 중빙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하고,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때는 운영성과가 부진한 									

	것으로 판단	
규제체계도	운영실적 및 성과 평가	지정취소
	중소기업청장 → 창업보육센터	

2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

(1) 규제의 필요성

1-1. 문제 정의

- 창업보육센터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정부 시책에 맞추어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

1-2.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□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제43조제4항제4호에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
- 그러나 현행 규정상 임대 실적만 지정 취소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,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전반이 부실할 경우 제재수단이 부재하여 창업보육센터 부실 운영 문제가 지속 제기
 - * 2013년 국정감사 창업보육센터 부실 운영 지적()건
- 따라서 창업보육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지정을